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	----

제출일자 : 2010. 0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 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 역할 정립과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본청-지역교육청』 간 원활한 사무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조직관리 지침의 운영)

나.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2010.5.7)

다. 우리교육청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안’(2010.6.1)

3.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 (안 제5조제2호)

초·중학교 종합감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감사시스템을 개선
감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

나.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 (안 제5조제4호)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코자 학생수용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

다. 지역교육청에 학교현장 지원 위임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5호,제26호)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의 다음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운영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교육복지
- 학생의 안전 및 건강
- 학생 통학구역
-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평생교육 진흥

○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유지보수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 업무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을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위주로 조직 개편하기 위함.

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삭제 (제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2010.9.1자 폐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취사항 : 붙임

나.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다. 교육규제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의 다음에 관한 사항

- 가.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다.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교육복지
- 라. 학생의 안전 및 건강
- 마. 학생 통학구역
- 바. 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사. 평생교육 진흥

26.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 가.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 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
- 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
- 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유지보수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 기관장·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 ~ 제4조 <생략></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도·감독 2. 제1호의 각급학교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3. 공·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변경인가 4.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 및 변경 <p>5.~24. <생략></p> <p>25. <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p>5.~24. <현행과 같음></p> <p>2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의 다음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p>

현행	개정안
<p>26. <신설></p> <p>제6조~제7조 <생략></p> <p>제8조(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p> <p>1.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p> <p>2. 소속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및 겸직허가</p> <p>3.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 경비출납원 임·면</p> <p>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p>	<p>원,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p> <p>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p> <p>다.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교육복지</p> <p>라. 학생의 안전 및 건강</p> <p>마. 학생 통학구역</p> <p>바. 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p> <p>사. 평생교육 진흥</p> <p>26.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p> <p>가.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p> <p>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p> <p>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p> <p>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유지 보수</p> <p>제6조~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 <삭제></p>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158호, 2010. 5.11, 일부개정]

제22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시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